

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0. . 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4H활동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간사를 현행대로 지도육성담당으로 수정하여 명칭을 명확히 하고, 4-H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6조 운영 위원회 간사를 '지도육성담당주사'에서 '지도육성담당'으로 수정함.

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지도육성담당주사”를 “지도육성담당으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(생략)	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	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② ----- -- 2025년 12월 31일-----.	②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. 1. ~ 5. (생략)	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	제3조(기금의 용도)(개정안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<u>각호</u> 의 재원으로 한다. 1. ~ 3. (생략) 4.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<u>금전·물품</u> 그 밖의 재산	제4조(기금의 조성)----- ----- <u>각호</u>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금전·물품</u> 및 그 -----	제4조(기금의 조성)(개정안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(개정안과 같음)
제2장 <u>운영 위원회</u>	제2장 <u>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	(개정안과 같음)
제6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<u>이내</u> 로 한다.	제6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이내</u> 로 <u>구성하되</u> 특정 <u>성별</u>	제6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

	<u>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
③ (생 략)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<u>지도육성담당</u>으로 한다. <u><신 설></u>	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지도육성담당주사</u>---. <u>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구미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.</u>	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<u>제3장 보칙</u> <u><신 설></u> <u>제11조 ~ 제14조 (생 략)</u>	<u><삭 제></u> <u>제3장 보칙</u> <u>제12조 ~ 제15조 (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)</u>	(개정안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 <u>제12조 ~ 제15조(개정안과 같음)</u>